

규제영향분석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목 차>

1.연계정보 분리·보관 유예기간 단축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연계정보 분리 · 보관 유예기간 단축		
	2.규제조문	연계정보의 생성 · 처리 등에 관한 기준 부칙 제1조 [별표4]의3		
	3.위임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6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6.04.30~2026.05.2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최근 빈번한 해킹 사고로 대규모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동시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를 결합하여 특정한 식별 및 추적을 통해 명의도용, 계정도용 및 스미싱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 · 처리 등에 관한 고시」에서 유예기간을 두었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 분리 보관 시행시기를 앞당김으로써 해킹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 달성 필요		
	7.규제내용	○ 연계정보 생성 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취해야할 안전조치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 분리 보관 시행일"을 앞당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연계정보 이용기관		
	9.규제목표	○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사항 중 주민번호와 연계정보 분리 · 보관 시행시기를 단축함으로써 주민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계정도용 및 스미싱 등의 2차 피해 확산 방지 및 최소화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미해당

			관련된 규제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u>[별표4]의 3.</u> <u>4-2 및 6. 규정은 2027년 5월 1일</u> <u>부터 시행한다.</u>	부칙 제1조(시행일) ----- ----- . 다만, <u>다음</u> <u>각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은 해당 호에서</u> <u>정한 날부터 시행한다</u> <u>1. [별표4]의 3 : 2027년 1월 1일</u> <u>2. [별표4]의 4-2. 및 6. : 2027년 5월 1일</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 (주)롯데카드의 해킹사고('25.9)로 연계정보 단독(836,282명) 및 연계정보와 주민번호가 함께 유출(452,313명)되는 사태가 발생
- '25년 국정감사('25.9) 및 과방위 전체회의('26.2) 등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보관 시기 유예기간 부여가 문제*임을 지적(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 * ①롯데카드가 주민번호와 연계정보를 분리하지 않아 해킹피해가 확대, ② 주민번호와 연계정보가 동시에 유출되었지만, 유예기간 부여 부칙 규정으로 인해 현재 법적 제재 불가능

□ 정부개입 필요성

- 최근 사이버 공격이 인공지능(AI)과 결합하여 지능화, 고도화됨에 따라 이통3사, 롯데카드, 쿠팡 등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및 이에 따른 국민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특히, 롯데카드와 같이 연계정보와 주민번호가 함께 유출('25.9)된 경우 정보결합을 통한 명의도용, 계정탈취 및 스미싱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엄중한 상황임
- 이에, 주민번호와 연계정보 분리·보관 시행일을 단축함으로써 지능화된 해킹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달성할 필요

주민번호는 집 주소와 같고, 연계정보는 현관문 열쇠와 같은 개념으로 주소(주민번호)와 열쇠(CI)를 한 바구니에 담아두면 도둑이 들었을 경우, 집안 전체가 도둑을 맞지만, 연계정보와 주민번호를 분리해 두면 도둑이 주소를 알아도 문을 못 열거나, 열쇠를 훔쳐도 어느 집 문인지 모르는 원리와 같으므로 분리보관 시행일을 당겨서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유출되는 위험을 차단하고 보안성 강화가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	대안명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분리 · 보관 유예기간 단축
	내용	-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분리·보관 시행일을 기존 '27.5.1.에서 '27.1.1.로 단축

○ 규제대안의 선택근거

- 최근 사이버 공격이 인공지능(AI)과 결합하여 교묘하고, 파괴적인 양상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이통3사, 롯데카드, 쿠팡 등)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에 대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 연계정보와 주민번호가 함께 유출 시 개인 특정화가 용이해져 명의도용, 계정도용 및 스미싱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민번호와 연계정보 분리 · 보관 시행일을 앞당겨 해킹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 달성 가능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금융기관(152개), 관련 협회(8개)	'25.10.23. kisa 서울 청사, 대면회의	유예기간 단축관련 주요 현안 및 단축 의견서 제출 요청	'25.11.14.까지 자료제출하토함
	'25.11.14. 서면	총 6개 협회 152개 연계 정보 이용기관 중 59개 기관은 조치 완료 하였고, '25년 하반기까지 조치 가능 기 관은 8개, '26년 상반기 까지 조치 가능 기관은	'26년 하반기 단축

		35개이며, '26년 하반기 까지 조치 가능 기관은 37개이며, 유예기간 (‘27.5.1.)까지 조치가능 기관은 13개로 취합	
	'26.3.9 서면(메일)	총 6개 협회 152개 연계 정보 이용기관 중 67개 기관은 조치 완료(‘25.12.말) 하였고, '26년 상반기까지 조치 가능한 기관은 35개, '26년 하반기까지 조치 가능한 기관은 42개이며, 유예기간(‘27.5.1.)까지 조치가능한 기관은 8개로 답변	

3. 규제목표

-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사항 중 주민번호와 연계정보 분리·
보관 시행시기를 단축함으로써 주민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
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계정도용 및 스미싱 등의 2차 피해
확산 방지 및 최소화에 기여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연계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를 함께 보유할 수 있는데, 두 정보가 함께 유출될 경우 해당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으므로,

-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분리·보관할 필요가 있어 해당 사항을 안전조치 사항으로 규정(고시안[별표4] 3.) 하였으며,

3.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보관 조치에 관한 사항

3-1. 비인가자의 접근 등에 의해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유출되지 않도록 물리적 또는 논리적 분리하여 보관

○ 당초 고시 제정 당시, 주민번호와 연계정보 분리·보관 시기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6개 협회 152개 기관 중 대부분(144개, 94.7%)이 올해안에 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당초 시행시기인 '27.5.1.에서 '27.1.1.로 단축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피규제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3년 평균 매출액 800억원 이하(정보통신업) 기준)하는 기업은 본 규제 개선의 영향을 받으나, 본 개정안은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보관 단축시기만 앞당기는 것으로 중소사업자의 재정적·관리적 부담이 없으므로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 없음

○ 타법사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칙<제2025-9호, 2025.10.31.>조문목록 접기	부	칙 <제2025-9호, 2025.10.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제12호 및 제13호, 제5조제1항 및 제6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발령한 날의 1년 후부터 시행한다.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자(연계정보 이용기관)에 대해 주민번호와 연계정보 분리·보관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함
- 주민번호와 연계정보 분리·보관 안전조치 의무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에 규정하여 수범자들의 혼선과 중복 규제 우려를 방지하였으므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음
- 더불어, 마이행 시 관련 규정(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제2의6)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규제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인적·물적 자원 동원 등이 불필요하여 행정적 부담이 없어 집행가능성이 높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기존 조직 및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재정적 지출 요인은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사업자 의견수렴) '25년도 국감 지적 후 고시 제정 당시 유예기간 의견을 제출했던 기관* 대상으로 국감지적 사항 등을 설명하고, 연계정보와 주민번호 유예기간 단축에 관한 회의('25.10.23.) 및 의견서(서면)** 취합('26.1)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 주민번호와 연계정보 분리보관 완료 여부, 조치가능 시기 및 유예기간 사유 등

- (의견수렴 결과) 총 6개 협회 152개 연계정보 이용기관 중 67개 기관은 조치 완료('25.12월 말)하였고, '26년 상반기까지 조치 가능 기관은 35개, '26년 하반기까지 조치 가능 기관은 42개이며, 유예기간 ('27.5.1.)까지 조치가능 기관은 8개로 취합

2. 향후 평가계획

- 연계정보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연계정보 보호조치 관련 실태점점 실시 예정

3. 종합결론

- 최근 사이버 공격이 인공지능(AI)과 결합하여 지능화, 고도화됨에 따라 이통3사, 롯데카드, 쿠팡 등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및 이에 따른 국민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특히, 롯데카드와 같이 연계정보와 주민번호가 함께 유출('25.9)된 경우 정보결합을 통한 명의도용, 계정탈취 및 스미싱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엄중한 상황임
- 이에, 주민번호와 연계정보 분리·보관 시행일을 단축함으로써 지능화된 해킹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달성할 필요